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우형찬 의원 외 22명

나. 의안번호 : 제737호

다. 제출일자 : 2015. 9. 9

라. 회부일자 : 2015. 9. 10

## 2. 제안사유

- 지하철은 매일 수백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기관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 법령 등에 따른 무임수송 및 낮은 운송원가 등에 따라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 또한 막대한 상황임
-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하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있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근거로 이에 대한 추가운임을 30배 부가하고 있으나 추가운임 부가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알림으로써 부정승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서울도시철도 이용시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자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2)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5. 9.14 ~ 2015. 9.21

○ 제출의견 :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지하철 이용문화 조성과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정승차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최근 5년간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11만천여건으로 '13년을 최고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15년 11월 현재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16,629건, 578,671천원으로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단속되지 않은 부정승차를 고려하면 실제 부정승차로 인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 ※ 부정승차 단속 실적<sup>1)</sup>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무표미신고		1회권 부정		교통카드 부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0,158	3,641,861	58,233	1,721,286	8,000	280,654	43,925	1,639,922
'15년 9월	16,629	578,671	4,939	130,501	773	28,990	10,917	419,180
'14년	17,570	588,408	6,006	157,534	1,227	43,704	10,337	387,170
'13년	38,041	1,325,352	21,247	703,386	2,207	78,969	14,587	542,997
'12년	26,835	855,550	17,513	515,002	2,650	94,154	6,672	246,395
'11년	11,083	293,880	8,528	214,863	1,143	34,837	1,412	44,180

1) 서울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 이와 관련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서울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27조(무표)<sup>2)</sup>에 따라 기본운임 외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승차 부가금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하철 부정이용에 대한 부가금 납부 및 단속근거를 강화할 수 있고, 시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것임

- 한편 동 개정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자문 결과 약관에 의해 징수하고 있는 부가금의 범위를 정하고, 상한에 대한 규제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가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sup>3)</sup>,

서울시장은 약관에 따른 부가금 징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sup>4)</sup> 따른 것으로 동 조례 개정시 부가금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과 함께 단속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sup>5)</sup>

---

2) 제27조(무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입법법률자문(2013.7)

4)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5) 교통정책과-26525(2015.12.8.)